

사전감사대상

문서번호	자자 5011-411		감사 18	
처리기한	1996. . .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8.1	
기 안	1996. 8. 1.	영구		
발 신	1996. . .			
과 장 부 장				
휴가중 31		정		
기 안 자	임 경	합	(법규과)기획부장 18	전 결 근 거 직무권한 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금부 자금과			
직 위	조사역 전화 4492	의		
수 신				
참 조				
제 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최근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금융 확대방안을 (붙임1)과 같이 검토하고 (붙임2)와 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무역금융 확대방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한국은행 행내 021-10(*80.11.19) ()				
(결제서식)				
발	필요	공	18	
송	기록	불		



(붙임 1)

貿易金融 擴大方案

1. 貿易金融 融資單價 引上調整

가. 現 況

— 95.4월이래 중소기업 무역금융의 달러당 평균 융자단가는 700원, 비계열
대기업의 평균 융자단가는 400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 자금별로는 자금의 성격과 지원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

융 자 단 가 현 황

(원/달러)		
	중소기업	비계열대기업
생 산 자 금	660	360
원자재수입자금	520	300
원자재구매자금	730	440
포 괄 금 융	700	400
평 균 *	700	400

* 자금별 융자단가를 융자취급실적으로 가중 평균

무역금융 취급실적

(억 원)				
	94말	95말	96.3말	5말
중 소 기 업	23,408	24,677	24,415	24,488
비계열대기업	3,705	3,792	3,762	3,350
계	27,113	28,469	28,177	27,838

— 최근 원화가 큰 폭으로 절하됨에 따라 무역금융의 融資比率이 下落

- 96.7월말 현재 대미달러환율은 813.3원으로 95.4월 대미달러환율 761.9원에 비해 6.7% 절하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달러당 평균 융자비율은 95.4월의 96.4%에서 86.6%로 하락

무역금융 융자단가 및 융자비율 추이

(원/달러)

	<u>90.4</u>	<u>91.11</u>	<u>93.4</u>	<u>95.4</u>	<u>96.7</u>
- 대미달러환율	706.2	754.9	795.9	761.9	813.3
- 융 자 단 가					
중 소 기 업	600(85.0)	650(86.1)	700(88.0)	700(91.9)	700(86.0)
비계열대기업	400(56.6)	400(53.0)	400(50.3)	400(52.5)	400(49.1)
()내는 달러당 평균 융자비율, %					

나. 改善方案

-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과거 지원비율 등을 감안하여 中小企業의 경우 평균 700원(융자비율 86.0%)에서 720원(88.5%)으로 인상조정하고, 非系列大企業은 평균 400원(49.1%)에서 450원(55.3%)으로 인상조정
- 中小企業은 90.4월이후 평균 융자단가가 100원(16.7%) 인상조정되었으나 非系列大企業은 동 기간중 인상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引上調整幅을 확대

- 자금용도별로는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 國產原資材 購買資金의 용자단가를 높게 인상조정(중소기업 30원, 비계열대기업 80원)하고, 原資材輸入資金의 용자단가는 낮게 인상조정(중소기업 10원, 비계열대기업 20원)

용자단가 인상조정(안)

(원)

	중소기업			비계열대기업		
	현행	조정안	조정폭	현행	조정안	조정폭
생 산 자 금	660	680	20	360	400	40
원자재수입자금	520	530	10	300	320	20
원자재구매자금	730	760	30	440	520	80
포 팔 금 용	700	720	20	400	450	50
평 균	700	720	20	400	450	50

2. 信用狀基準 貿易金融 融資限度 擴大

가. 現 況

-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용장기준 무역금융의 경우 융자한도를 과거 4個月間 輸出實績 범위내에서 제한
 - 무역금융 융자한도 : 과거 4개월간 수출실적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3 범위내

나. 改善方案

- 현재 일시적으로 수출신용장이急増하는 경우 特別融資限度를 추가로承認 받을 수는 있으나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특인 이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중소수출업체의 무역금융을 活性化하기 위해 信用狀基準 貿易金融 融資限度를 擴大
 - 현행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3 또는 4개월간 수출실적에서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2 또는 6개월간 수출실적으로 확대
 - 현재 신용장기준 무역금융한도 대비 실제 융자취급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한도여유가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기준 무역금융 취급액이 전체 무역금융 취급액의 약 6%인 1,600억원에 불과하여 신용장기준금융의 융자한도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7조 ~ 제11조 (생략)	제7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용자한도) ① 신용장기준금융을 수혜하는 업체(이하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라 한다)에 대한 용자한도는 용자수혜분에 상응하는 수출예정액(이하 “미선적잔액”이라 한다)이 용자취급승인 전월로부터 <u>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3</u> 또는 <u>과거 4개월간</u> 수출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제12조 (용자한도) ① <u>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2</u> 또는 <u>과거 6개월간</u>	- 용자한도 확대
다만,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선수출계약서 및 수출신용장에 대한 용자는 위의 용자한도 범위내에서 미선적잔액이 용자취급승인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동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1/2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5%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용자취급월로부터 <u>4개월</u> 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용자는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② <u>6개월</u> 이	- 신규업체의 취급요건 완화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금액) ① 용도별 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에서 정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융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 또는 수출 실적확인서의 가득외화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66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6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3. 원자재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4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 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②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 제7항의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용장기준금융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자사제품 수출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실적기준금융 : 수출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제14조(융자금액) ① 용도별 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에서 정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3.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6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융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②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 제7항의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용장기준금융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5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실적기준금융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5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 융자단가 인상조정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5 조 ~ 제 18 조 (생 략)	제 15 조 ~ 제 18 조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 19 조 ~ 제 20 조 (생 략)	제 19 조 ~ 제 20 조 (현행과 같음)	
제 21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 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 21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 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용자단가 인상조정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 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외화입금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대하 여 <u>미화 1「달러」당 660원을</u> 곱한 금액 범위내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 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외화입금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대하 여 <u>미화 1「달러」당 680원을</u> 곱한 금액 범위내	
2. 원자재수입자금의 용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 (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 하여 <u>미화 1「달러」당 520원을</u> 곱한 금액 범위내	2. <u>미화 1「달러」당 530원을</u>	
3. 원자재구매자금의 용자금액은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에 대하여 <u>미화 1「달러」당 730원을</u> 곱한 금액 범위내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용자금액은 내국 신용장 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u>미화 1「달러」당 520원을</u> 곱한 금액 범위내	3. <u>미화 1「달러」당 760원을</u>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u>미화 1「달러」당 530원을</u>	
제 22 조 ~ 제 37 조 (생 략)	제 22 조 ~ 제 37 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 8.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용자금 에 대하여는 동 용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 용한다.	- 시행일 및 경과조치 명시